

지방의회 관련 법령과

제도에 대한 이해



학력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행정학과(공공정책) 석사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박사

경력

전) 국회의원 비서관

전)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담당관 기술법제팀장

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정책연구위원

01

대한민국 헌법
지방자치법 등
자치법규

지방의회 관련 법령

02

지방의원 권한과 의무
지방의원 정수 및 선거
지방의원의 임기와 보수
지방의원의 신분 관련

지방의원

03

의장단
본회의와 위원회
교섭단체
사무기구 및 직원

지방의회 조직

04

지방의회 사무범위
지방의회와 주민참여제도
단체장과의 관계
지방의회 의안 등 처리 절차

기타



01

지방의회 관련 법령

1 「대한민국 헌법」

- 지방자치제도를 헌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제1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자치행정권), 재산을 관리하는 사무(자치재정권),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사무(자치입법권)를 규정하고 있음

2 「행정기본법」

- 지방자치단체가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나 그 하위법령에서 조례 등 자치법규로 정하도록 하거나 법령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하는 입법활동에 관한 원칙과 기준 제시

3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주민, 조례와 규칙, 집행기관, 지방의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5 그 밖의 지방자치에 관한 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재정법」 등
- 제주특별법 등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되는 개별 법령
-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짐

1 조례

-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지방자치법」 제28조)

2 규칙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지방자치법」 제29조)

3 교육규칙

- 교육감이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4 / 의회규칙

- 지방의회가 의회의 내부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규칙(「지방자치법」 제52조)

5 / 회의규칙

- 지방의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규칙(「지방자치법」 제83조)



02

지방의원

1 지방의원 권한

• 의안발의권

- 지방의원은 의회에서의 의결대상이 되는 의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음
-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예·결산안, 동의안, 승인안과 같은 의안은 발의할 수 없음

• 동의발의권

- 동의란 안건을 처리하거나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제안, 즉 제출하는 것을 말하는데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

• 발언권

- 의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장(위원회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고 토론하며, 의사진행발언이나 구두동의를 위한 발언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음

• 표결권

- 지방의원에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권한으로서 심의하는 안건에 대하여 찬성·반대 또는 기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

1 지방의원 권한

• 선거권 및 피선거권

- 지방의원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임시의장 등을 선출하는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이러한 직에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가짐

• 청원소개권

- 주민이 지방의회에 청원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방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야 하는데, 이 경우 지방의원은 주민이 제출하려는 청원 취지에 찬동하는 경우 해당 지방의회에 그 청원을 소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 요구권(청구권)

- 지방의원은 의회 또는 의장에게 어떤 행위를 구하는 요구권을 가짐
- 임시회 소집요구권, 의원의 자격심사 요구권, 의원의 징계요구권, 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요구권, 본회의 재개요구권, 서류제출요구권, 서면질문요구권 등이 있음

2 지방의원 의무

- 공공이익우선의 의무

- 지방의원은 의정활동을 하고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청렴 및 품위유지의 의무

- 지방의원은 청렴해야 하고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음

- 회의출석 및 직무전념의 의무

- 지방의원은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음

- 지방의원도 공무원이므로 성실과 전력을 다해 그 맡은바 직무를 수행해야 함

- 직위남용금지의 의무

- 지방의원은 그 직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됨

- 질서유지의 의무

- 지방의원은 본회의와 위원회 등 지방의회에서 회의질서를 지켜야할 의무가 있음

2 지방의원 정수(2022. 6. 1 기준)

구 분	시도의원 정수	시군구의원 정수		
		시군구 개수	의원 정수	
전국(총계)	872(93)	226	2,988(386)	
서울특별시	112(11)	25	427(54)	
광역시 특별자치시	부 산	47(5)	16	182(25)
	대 구	32(3)	8	121(16)
	인 천	40(4)	10	123(15)
	광 주	23(3)	5	69(9)
	대 전	22(3)	5	63(8)
	울 산	22(3)	5	50(6)
	세 종	20(2)	-	-
도 특별자치도	경 기	156(15)	31	463(57)
	강 원	49(5)	18	174(23)
	충 북	35(4)	11	136(17)
	충 남	48(5)	15	177(26)
	전 북	40(4)	14	198(25)
	전 남	61(6)	22	247(32)
	경 북	61(6)	23	288(37)
	경 남	64(6)	18	270(36)
	제 주	40(8)	-	-

()의 숫자는 비례대표 의원정수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는 교육의원(5명)이 별도로 있음

2 지방의원 선거

- 선거권과 피선거권

- 선거권: 주민이 지방의원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 피선거권: 선거에 의한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함

- 후보자

- 후보자란 선거에 당선되기 위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공인 받는 사람을 말함
- 지방의원 입후보자는 정당의 추천을 받거나, 일정한 수 이상 주민의 추천을 받아 등록을 신청
- 지방의원 선거에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선거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후보를 제한하게 됨

- 선거구

- 광역의원: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시·군을 분할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 채택
- 기초의원: 시·군·구의회의 의원은 2개 이상 읍·면·동 단위의 선거구에서 2인~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음

지방의원의 임기와 보수

02

- 지방의원의 임기는 4년임
- 월정수당
 - 지방의원은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월정수당을 지급 받음
 - 월정수당의 지급액은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하되, 지방의원 총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자체의 주민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함
- 의정활동비
 -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연구활동과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의정활동비(의정자료 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를 기준에 따라 지급

구 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원	월 900,000원 이내	월 200,000원 이내

지방의원의 임기와 보수

02

• 여비(국내·국외)

- 국내여비: 지방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
- 국외여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 다만, 국제회의·자매결연에 따른 국외출장의 경우 국외여비 연간 편성 한도액의 30% 범위에서 추가 편성 할 수 있음

1 의원의 자격발생 및 소멸

• 의원의 자격발생

- 지방의원은의 자격은 선거에서 당선된 후 임기가 개시됨과 동시에 발생

• 의원의 자격소멸

자격소멸내용	자격소멸요건	비 고
사망	- 의원이 사망하는 경우	- 사망일에 결원
사직	- 의원 본인의 사직의사에 의한 본회의 허가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	(자치법 89)
퇴직	- 겸할수 없는 직을 겸할 때 -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 징계에 의해 제명된 때 - 다른 자치단체 구역으로의 주민등록이전 등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자치법 90) - 퇴직사유가 발생하면 법률상 퇴직의 효과 발생 - 사망한 때도 의원자격 소멸
징계에 의한 제명	- 지방자치법 또는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 -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제명 의결	(자치법 100)
자격심사에 의한 자격상실	- 의원의 자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자격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자격상실 의결	(자치법 92①)
선거또는 당선무효 (선거소송)	- 선거소송에 의해 선거·당선이 무효된 때 - 선거비용의 초과지출에 의한 당선 무효 - 당선인·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 선관위의 당선결정 착오시정에 의한 당선 무효도 있음
비례대표제의원 자격상실	- 비례대표에 의해 당선된 지방의원이 소속정당을 이탈·변경하는 경우, 당적을 2개 이상 가지게 된 때에는 의원자격 상실	- 「공직선거법」 제52조제1항 제6호
주민소환에 의한 자격상실(해임)	- 주민소환투표가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3조 가

2 의원의 사직 및 퇴직

• 의원사직

- 지방의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장에게 스스로 사직허가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형식: 의원의 사직서 제출은 일정한 형식은 없으나, 반드시 사직서에 의원 본인이 서명하거나, 의회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함
- 지방의원이 그 직을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지방의원의 사직서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의원신분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처리해 주어야 할 것임
- 지방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허가하기 전까지 의원 본인은 이를 철회할 수 있음
- 의원사직서가 본회의 의결(또는 의장허가)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15일 이내(의결 또는 허가 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함

2 의원의 사직 및 퇴직

• 의원퇴직

- 지방의원의 임기는 4년이나,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원의 신분을 잃게 되고 그 직에서 퇴직하게 됨
- 지방의원이 퇴직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 등 별도의 절차가 없이 당연히 의원직에서 퇴직된다고 할 수 있음
- 비례대표제에 의해 당선된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소속정당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 의원직에서 퇴직 됨

3 의원의 제명 및 자격심사

• 의원의 제명

-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법 또는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지방의회에서 징계할 수 있으며, 가장 무거운 징계가 제명임

• 의원의 자격심사

- 지방의회는 자율권에 의하여 의원신분에 관한 여러가지 권한을 갖는데 의원의 자격심사도 그 중 하나임

- 현행법상 지방의원의 자격요건은 적법한 당선인일것, 겸직이 금지된 직에 취임하지 않을 것,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을 계속 보유할 것 등

- 지방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적의원 1/4 이상의 찬성으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 지방의원 자격심사 안건을 의결(자격 없음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함

- 지방의회의 자격상실 의결은 행정기관의 법적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03

지방의회 조직

1 의장단 선출방법 및 임기

• 의장단 선출방식

- 지방의회 의장 및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 선출방식은 후보자 등록 없이 모든 의원이 선거권자이면서 피선거권자 위치에서 선거
-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후보등록제와 정견발표제를 도입하여 실시

• 임기

-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광역의회의 경우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 기초의회의 경우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
-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임. 그러나 보궐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이 됨
- 지방의회 의장단은 임기 중에 본인의 사임에 의한 경우, 의원으로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의장(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
- 의장과 부의장이 그 직을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본회의에서 허가를 받아야 함

2 의장의 권한

• 의회대표권

- 의장은 외부에 대하여 지방의회를 대표함. 집행기관 등에 대한 대외적인 의사표시는 의장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외부에서도 의회에 의견을 표시하거나 공문을 발송할 때에는 의장 앞으로 하게 됨

• 의사정리권

- 의장은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광범위한 의사정리권을 가짐
- 개의선포, 의사일정 작성과 협의, 회의의 산회·중지 선포, 비공개회의 등 간단한 회의진행 관련 사항의 제의, 의안의 위원회 회부 및 심사기간 지정, 발언의 허가·조정, 표결선포, 회의록 서명·날인 등

• 질서유지권

- 의장은 의회의 회의장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질서유지권을 가짐

• 의회소속 직원 임명권, 사무처리 및 감독권

-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의회소속 사무직원의 임명권(임명·교육·훈련·징계 등)을 가짐

2 의장의 권한

• 의장경유권

- 지방의회의 위원회가 일정한 행위를 할 때 의장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
- 단체장 및 공무원 출석요구, 행정사무감사·조사 시에 보고·서류제출요구·증인출석요구·현지확인 통보 등

• 의장경호권

- 의장은 의회 안에서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음

• 의회운영 관련 협의 요구권

- 지방의회 조례 또는 회의규칙에서 의장은 전체의사일정을 작성할 경우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의원의 겸직 사임권고 및 의견청취

- 의장은 지방의원이 겸직 사임직에 겸직을 하고 있는 경우, 겸직이 의원의 청렴·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되는 경우에 해당의원에게 사임권고를 해야 함

3 의장단 사임처리 및 불신임의결

- 의장단 사임처리 방법

- 의장·부의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음

- 의장사직서 접수

- 현직 의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부의장이 접수(결재)하고, 부의장의 사회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의장단 불신임의결

-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중추적인 기관으로서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반드시 법령을 준수함은 물론 누구보다도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것이 요구됨

- 의장단 불신임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임

1 본회의와 위원회

- 본회의

- 본회의는 그 자치단체의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로서 지방의회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최종결정단계임

- 위원회

-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증대하고 전문화되어 감에 따라 지방사무를 심의·결정하는 지방의회도 안건을 능률적이고 전문분야별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소수의 의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체임

-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소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2 윤리심사자문위원회

• 설치

- 지방의회에서는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심사·징계에 대한 자문을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어야 함

• 자문(의견제시) 대상

- 의장에 대한 의견제시(자문)
-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한 의견제시(자문)

• 구성 및 운영

-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민간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함

1 교섭단체

• 의의

- 교섭단체는 지방의회에서 동일한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로 구성되는 원내단체를 의미함

• 구성요건

- 교섭단체는 일정 의원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을 단위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임
-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들이 모여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미래제주

• 구성시기 및 명칭

- 일반적으로 교섭단체 구성 시에 언제까지 구성해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음. 일반적으로 지방의원 총선거 후 임기가 개시된 경우 새로운 의회가 개원되기 전까지 제출하게 될 것임
- 교섭단체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소속정당명을 사용
- 교섭단체는 소속의원의 탈퇴·사망 등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최소의원 수가 되지 못하는 경우 그 지위를 상실함

1 교섭단체

- 대표의원과 지원직원

- 교섭단체는 해당 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을 선임해야 함
- 교섭단체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에 필요한 직원을 두는 의회도 있음

- 교섭단체 소속의원의 변경·이동 보고

-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소속의원의 이동이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의장에게 보고함

- 교섭단체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역할

- 교섭단체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지방의회 운영에 대해 일정한 개입을 하고 역할을 하게 됨
- 구체적인 역할은 해당 지방의회의 조례나 규칙 등에서 정하게 됨

1 사무기구

• 의의

- 지방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를 둠

• 사무기구의 유형

- 지방의회는 의회사무를 전담하여 처리하고 의원들의 회의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사무기구를 둠

-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의회사무기구명	설치대상
의회사무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의회사무국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만명 이상인 시·자치구,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이상이고 실·국의 설치 기준에서 "인구 10만 미만" 구간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군
의회사무과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미만인 시·군·구, 실·국의 설치 기준에서 "인구 10만 미만" 구간의 기준을 적용받는 군

2 사무직원

•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함
-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권자는 해당 지방의회 의장임

• 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사무처장,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해당 지방의회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그 외의 직원은 사무분장에 따라 담당업무를 처리

• 시도의회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지원

- 시도의회외의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에서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회외의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두도록 규정
- 이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사무직원은 시도의회외의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함

3 전문위원

• 임무 및 위치

- 지방자치법 제68조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둠
-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운영 및 의사진행을 보좌하고, 안전심사와 관련한 검토보고서 및 심사보고서 작성,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등을 행함
- 위원회 업무와 관련해서는 해당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일반행정 처리와 관련해서는 의장 또는 사무처(국·과)장의 지휘를 받는 위치에 있게 됨

• 전문위원 수 및 직급

-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담당업무

- 지방의회 전문위원의 업무는 의회사무처(국·과)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사무전결 처리 규칙 등에 따라 결정됨

4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연구위원, 정책지원관)

• 역할 및 인원

- 지방의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지방의원 정수의 1/2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둠(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법 제39조에 따라 21명의 정책연구위원을 둠)

• 직무

- 정책지원관의 직무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정책연구위원의 직무는 제주특별법 제39조에서 규정)

• 임용 및 직급

- 지방공무원 임용령 상의 임용절차 등을 적용하여 임용함
- 광역의회: 6급 이하, 기초의회: 7급 이하(정책연구위원: 5급)

• 배치 및 복무

-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사무처 또는 위원회에 배치할 수 있음



04

기타

1 지방의회 사무범위

- 지방자치단체 사무
 -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가 있음
- 자치사무
 -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과 관련된 본래의 사무로서 법령상 국가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사무
- 단체위임사무
 -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자치단체에 그 처리가 위임된 사무
- 기관위임사무
 -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처리가 위임된 사무

1 지방의회 사무범위

구분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1.법적근거 (형식적 기준)	자치법 제13조제2항	개별 법령	자치법 제115조 (일반적 근거)
2.사무의 성질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책임과 부담하에 처리하는 사무 -자치단체의 존립유지에 관한 사무	-개별적 법령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타단체에게 위임된 사무 -자치단체 자체에 위임되었거나 소속된 사무	-법령의 규정 및 일반통칙에 의하여 하급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 -사무의 성질이 지방적 이해관계가 없는 국가사무
3.실질적 기준 - 전국적 · 국가적 통일성/이해	소	중	대
- 지역적 · 지방적 특수성/이해	대	중	소
4.구별실익 ①경비부담	자치단체 전액부담 일부 보조(장려성 보조금) 「지방재정법」 제20조	위임기관의 일부 부담 일부 국가부담(부담금) 「지방재정법」 제21조	전액 국고부담 원칙 (위탁금, 교부금) 「지방재정법」 제21조
② 상급 기관 감독권	소극적 감독	-소극적 감독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적극적 감독 (사후관리) -주로 위법사항만 감독	-적극적 감독(사전감독, 합목적성 감독) -위법부당한 사항까지 감독
③해당 의회 관여범위	관여	관여	제한적 관여 (자치법 제49조제3항)
④재위임 가능성(수단)	조례로 위임가능 (자치법 제117조)	재위임 가능(조례) (자치법 제115조)	재위임 가능(상급기관의 승인 후 규칙으로)
⑤손해배상책임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위임주체 또는 수임 주체(판례검토)

2 지방의회와 주민참여제도

- 주민투표

-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

- 주민청구조례안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의회에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임

- 주민소송

-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를 지역주민이 자기의 권리·이익에 관계 없이 주민자격으로 그 시정을 법원에 청구(소송)하는 것임

2 지방의회와 주민참여제도

- 주민감사청구
 - 주민이 단체장이나 공무원의 법령위반 등에 관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
- 주민소환
 - 임기가 정해진 단체장, 지방의원을 임기만료 전에 투표절차를 거쳐 해임하는 제도

3 지방의회와 단체장과의 관계

• 기본적 관계

- 자치단체장과 의회는 그 성립과 기능에 있어서 상호독립의 관계를 가짐
- 자치단체장과 의회는 그 자치단체의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일정한 범위에서 상호 보완적이고 의존적인 관계 유지
- 자치단체장과 의회는 상호 통제·견제 관계 유지

• 단체장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

- 의결권: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개정,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 승인, 각종 사항에 대한 동의·승인 등 의결권을 통해 단체장을 통제
- 행정사무감사·조사권: 지방의회는 의회의 의결대로 또는 법령에 따라 지방행정사무를 올바르게 처리하는가의 여부를 감사하고 조사함으로써 단체장을 통제
- 단체장 출석요구 및 서류제출요구권: 지방의회는 단체장이 처리하는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3 지방의회와 단체장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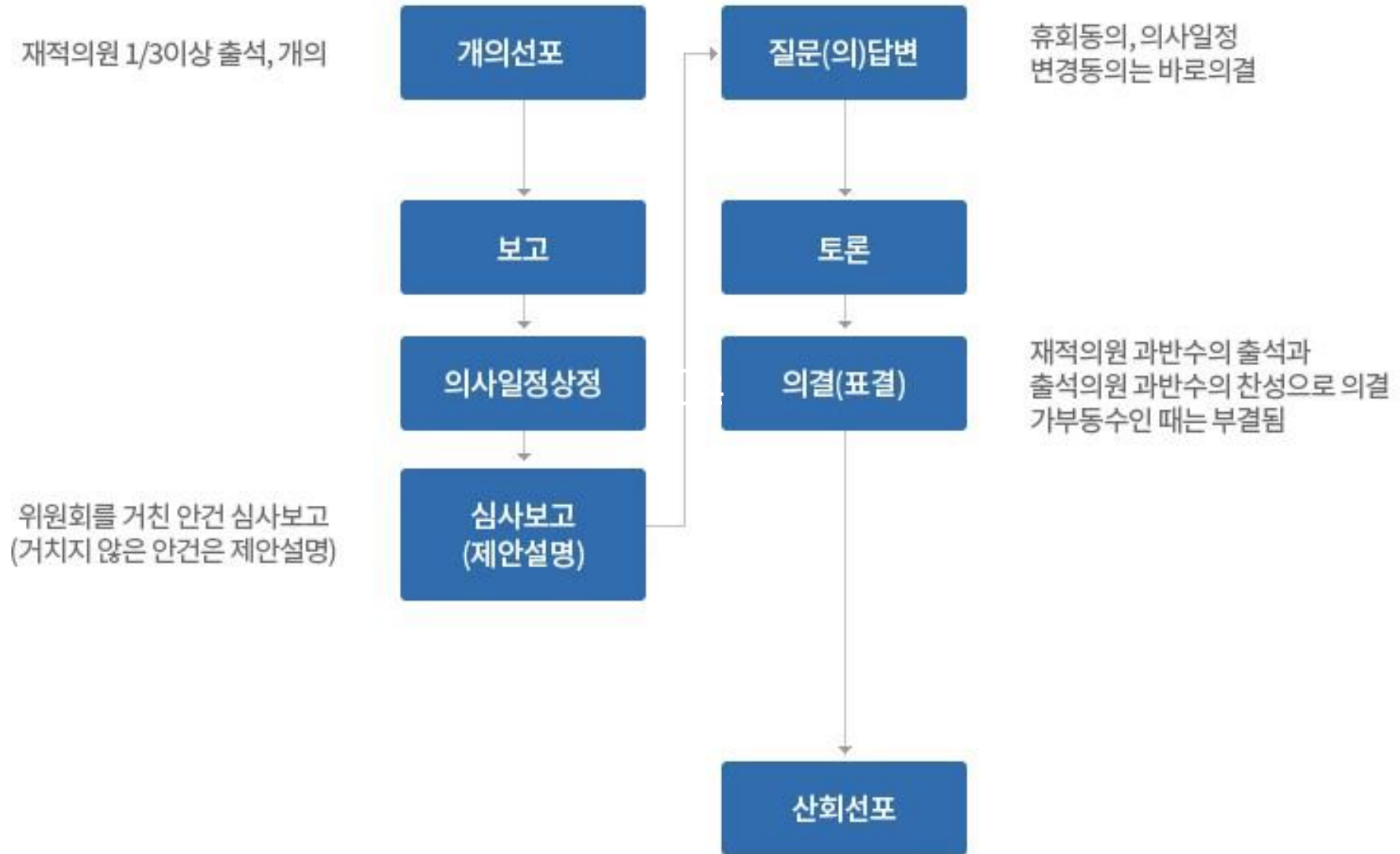
- 과태료 부과 요구 및 징계 조치요구권: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하면서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이나 증언선서를 거부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요구할 수 있음. 결산심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의장의 조례 공포권: 단체장이 이송되어온 조례안을 20일 이내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조례가 확정된 경우, 재의요구된 조례가 의회에서 재의결·확정되어 단체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단체장이 공포하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조례를 공포함
- 의회에 대한 단체장의 견제권
 - 재의요구권: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나 법령에 위반,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예산상 집행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조례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감독관청의 재의요구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견제기능을 갖고 있음

3 지방의회와 단체장과의 관계

- 선결처분권: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긴급히 필요함에도 지방의회가 의결을 하지 않거나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체장은 의회이 의결을 받지 않고 우선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선결처분권을 가짐
- 대법원 제소권: 단체장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의회에서 이를 재의결·확정한 경우에 그 의결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동의권: 지방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체장의 동의를 있어야 함
- 의견진술권: 의회가 새로운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조례나 기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그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임시회 소집요구권: 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위원회 개회 요구권: 단체장은 지방의회 폐회 중에 위원회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개회를 요구할 수 있음
- 교육감에 의한 의회 견제권
 -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안건)에 관해서는 단체장과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기타(위원회 심사 절차)

04



기타(의안처리 절차)



기타(예산심의 확정절차)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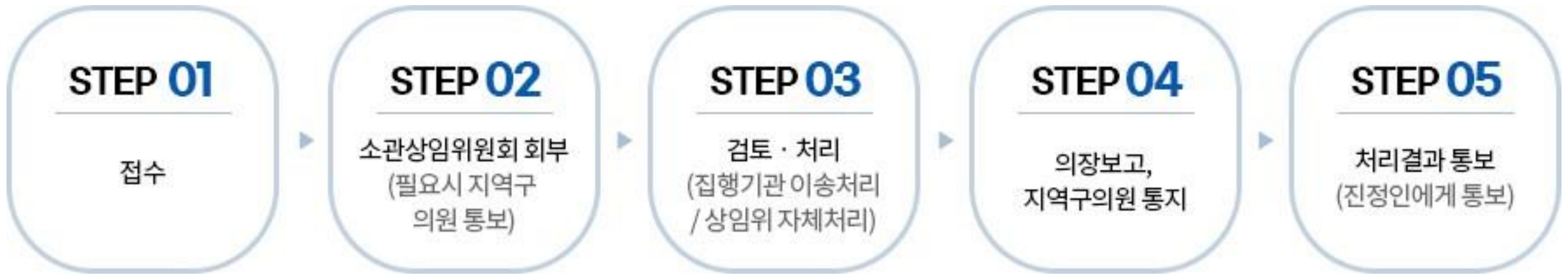


기타(행정사무감사)



기타(진정민원 처리절차)

04



기타(청원처리 절차)

04



기타(발의 및 의결정족수)

안 건	발의정족수(발의자)	의결정족수
일반안건 (조례, 규칙안 등)	- 도의회의원: 재적의원 1/5이상의 연서 - 도지사·도교육감·도의회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지방자치법 제73조)
의장, 부의장 선거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9조)
의장 불신임안	- 재적의원 1/4이상 (지방자치법 제62조)	-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지방자치법 제62조)
조례안 재의요구	-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 (지방자치법 제32조)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 (지방자치법 제32조)
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 (지방자치법 제120조)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 (지방자치법 제120조)
행정사무조사	- 재적의원 1/3이상의 연서 (지방자치법 제49조)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지방자치법 제73조)
의원의 자격심사	- 재적의원 1/4이상의 연서 (지방자치법 제91조)	-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자격상실 (지방자치법 제92조)
행정시의 사무소 소재지		-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제주특별법 제10조)
제주특별법 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 재적의원 2/3이상의 동의 (제주특별법 제19조)
교육재정 지방채 등의 초과발행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 (제주특별법 제85조)
자치재정 지방채 등의 초과발행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 (제주특별법 제126조)
의원의 징계	- 재적의원 1/5이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94조)	- 징계의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지방자치법 제73조) - 제명의결: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 (지방자치법 제100조)
지방자치단체장 및 공무원 출석요구	- 재적의원 1/5이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7조)	- 본회의 의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7조)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 최민수, 2022. 지방의회 운영(제9차 전면개정판). 제윤의정학술연구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누리집([제주특별자치도의회](#))